

이 보도자료는 배포 즉시 보도하여 주시고, 공개되는 범죄사실은 재판에 의하여 확정된 사실이 아님을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대구고등검찰청

전문공보관 인권보호관 김희경
전화 053-740-3305 / 팩스 053-740-3228

보도자료

2024. 2. 16.(금)

제목 **고검 직접수사로 출입국 브로커 3명 기소(2명 구속)**

공소제기 후 공개의 요건 및 범위

- 피고인, 죄명, 공소사실 요지, 공소제기 일시·방식, 수사경위·상황, 범행경과 및 수사의 의의 등(제11조 제1항)
- 제9조 제1항 제1호 내지 제6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고 미리 공개가 필요한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인정되어 소속 검찰청의 장의 승인이 있는 경우(제11조 제2항 제2호) 제7조 제2호 내지 제6호의 공개금지정보

- 대구고등검찰청(검사장 노정연)은 무혐의 처분 후 항고 제기된 사기 사건을 수사경험이 풍부한 고검검사(이종구)가 직접 수사개시하고, 전국 검찰청에 송치된 관련 사건(5건)을 이송받아 함께 수사한 결과, 전문 출입국 브로커 3명에 대한 사기, 무허가 외국인 고용알선, 변호사법위반 등의 범행 전모를 밝혀내 오늘(2. 16.) 기소(2명 직접 구속, 1명 불구속)하였습니다.
- 대구고검은 항고사건을 면밀히 검토한 결과, 단순 사기 사건이 아니라 피고인들이 출입국 전문 브로커로 강하게 의심되어 고검검사가 직접 수사에 착수하였습니다.
 - 전국 검찰청에 송치된 피고인들에 대한 허위초청 및 불법 고용알선 등 5건을 이송받아 병합 수사하면서, 주거지 압수수색, 계좌추적, 법무부 산하 출입국·외국인청 및 해외 주재 한국대사관 등 상대 사실조회를 적극적으로 실시한 결과,
 - 3명의 전문 출입국 브로커가 외국인 1명 당 200만원을 받기로 하고 초청서류 65장을 위조하여 총 58명을 불법입국시키려 한 사실을 확인하였습니다.
- 향후 검찰은 출입국·외국인 정책에 혼선을 초래하고 선량한 외국인 근로자들의 생계를 위협하는 불법 출입국 알선범죄에 엄정하게 대응하겠습니다.

I

피고인 및 공소사실 요지

1. 피고인(3명)

- A (남, 41세, 조선족 중국인, 구속 기소)
- B (남, 52세, 구속 기소)
- C (여, 35세, 베트남인)

2. 공소사실 요지

- (A, B) '21. 1.~3. 마스크 제조사업 투자 및 투자비자 발급 등 명목으로 약 1억원을 편취하고, '20. 11. 허위의 체류기간 연장, 투자비자 발급을 신청하는 대가로 550만원 수수 [사기, 변호사법위반, 출입국관리법위반]
- (A, C) '22. 3.~6. 불법체류 외국인 석방을 알선하는 대가로 600만원 수수, '21. 12.~'22. 2. 외국인 근로자 16명의 고용을 알선하고 그 대가로 2,770만원 수수 [변호사법위반, 출입국관리법위반, 직업안정법위반]
- (A) '19. 9.~'21. 2. 불법체류자 석방 알선, 체류기간 연장 신청을 하는 대가로 700만원을, 허위로 난민신청하는 대가로 600만원을 수수하고, '21. 11. 불법체류자 고용을 알선하는 대가로 200만원 수수 [변호사법위반, 출입국관리법위반, 직업안정법위반]
- (B) '21. 7.~'23. 7. 1인당 200만원을 받기로 약속한 후 허위로 외국인 58명을 초청하고, 5개 회사 명의를 도용하여 외국인 초청서류 65장을 위조 및 사용 [변호사법위반, 출입국관리법위반,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

II

수사 경과

- '23. 7. 검찰, 피고인 A·B 혐의없음 처분
 ※ 단순 투자금 사기사건(1건)이 경찰의 불송치 후 이의신청 송치되었으나, 당시에는 피해자의 진술만으로 혐의를 인정하기 어려워 혐의없음 처분
- '23. 8. 고소인, 피고인 A·B에 대하여 항고, 대구고검 송부
- '23. 9. 대구고검, 항고사건 재기하여 직접수사 개시
 ※ '23. 9.~10. 피고인 A·B의 불법체류자 고용알선, 허위초청, 초청서류 위조 행사 등 사건 5건이 3개 검찰청에 나누어 송치되어, 5건 모두 이송받아 병합수사

- '23. 10.~24. 1. 계좌추적 2회, 해외 주재 한국대사관, 법무부 출입국 외국인청 상대 사실조회, 참고인 조사 등 실시
- '23. 11.~24. 1. 피고인들의 추가 범행 확인하여 검찰 인지

<검찰에서 추가로 인지한 피고인들의 범죄>

- 변호사법위반, 출입국관리법위반, 직업안정법위반 등 -

- ① (A, B) 외국인의 체류기간 연장을 해 주겠다며 150만원 수수
- ② (A, C) 불법체류자의 석방을 알선해 주겠다며 600만원을, 외국인 14명의 고용을 알선해 주겠다며 1,870만원 수수
- ③ (A) 불법체류자의 석방 알선과 체류기간 연장 명목으로 700만원을 수수, 허위로 난민신청을 해 주겠다는 명목으로 600만원 수수
- ④ (B) 허위사실로 외국인 33명을 초청하면서 3개 회사의 명의를 도용한 초청서류 26장을 위조하여 사용

- '24. 1. 피고인 B 주거지 압수수색 및 체포
- '24. 1. 피고인 A, C 각 주거지 압수수색
- '24. 2. 피고인 A·B 직접 구속
- '24. 2. 16. 피고인 A·B·C 기소

III 수사 결과 및 의의

1. 외국인 불법체류자 문제를 양산하는 출입국 브로커 범행 엄단

- 피고인들은 위조·허위서류로 외국인들을 부정 입국시켜 불법체류자를 양산하고, 열악한 상황에 처한 국내 체류 외국인들 대상으로 비자발급 등 명목으로 거액을 편취하였습니다.
- 검찰은 치밀한 수사 끝에, 피고인들이 출입국 관련 각종 법률 업무를 수행하면서 불법적으로 고용을 알선한 후 고액의 수수료를 챙기는 등, 출입국·외국인 정책에 혼선을 초래하면서 장기간 부당한 이익을 취득한 전문 출입국 브로커임을 밝혀냈습니다.

2. 항고절차를 통한 2단계 검증으로 암장될 수 있었던 범죄 적발

- 경찰의 불송치 후 이의신청 송치된 단순 투자금 사기사건(1건)에 대하여 피고인들이 전문 출입국 브로커인 사실을 모른 채 피해자의 진술만으로는 혐의를 인정하기 어려워 혐의없음 처분하였으나,
- 항고절차를 통해 수사경험이 풍부한 고검검사가 관련사건들을 모두 병합하여 면밀히 검토한 결과, 단발적인 사기 범행이 아닌 ‘전문브로커에 의한 상습적인 범행’임을 파악하고 범행의 실체를 밝혀내었습니다.

3. 여러 청에 흩어진 사건들을 병합 수사하여 죄에 상응하도록 처벌

- 전국 각 청에 흩어져 있던 관련사건 5건을 이송받아 병합 수사함으로써 각각의 사건들이 전문브로커에 의한 일련의 범행이었음을 확인하고, 외국인 14명 불법 고용알선, 외국인 33명 불법입국 등의 추가범행을 적발하여 함께 기소하였습니다.
- 각각 개별적으로 처리하였다면 소액 벌금형 처벌에 그칠 수 있었던 사건들에 대하여 죄에 상응하는 엄정한 처벌이 가능하도록 하였습니다.

4. 고검에서 실질적이고 적극적인 수사 수행

- 사건의 특성상 수사경험이 풍부한 고검검사가 직접 수사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하여 직접경정 결정한 후 계좌추적, 압수수색, 피의자 체포 및 구속 등에 이르기까지 철저하게 직접수사를 진행하였습니다.
- 위와 같이 고검에서 항고사건을 면밀히 검토하고 적극적이고 실질적인 수사활동을 함으로써 출입국 전문 브로커의 지능적 범행을 엄단하고 항고인의 권리구제에 기여하였습니다.

IV 향후 계획

- 검찰은 피고인들에게 죄에 상응하는 처벌이 이루어지도록 공소수행에 최선을 다하고, 열악한 상황에 있는 외국인들의 처지를 악용하여 금품을 빼앗아가고 출입국 질서를 어지럽히는 범죄에 엄정하게 대응하겠습니다.■■■■